

의안 번호	제3573호
----------	--------

김포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5년 1월 31일 유매희 의원, 이희성 의원
- 나. 회 부 일 자 : 2025년 2월 10일
- 다. 상 정 일 자 : 2025년 2월 18일
- 라. 의 결 일 자 : 2025년 2월 18일

2. 제안이유

- 가. 교통안전문화 확립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에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교통안전문화 확립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추가적으로 명시(제10조에 제2항)

4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문화 확립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에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,
- 기존의 시설물 설치, 개선, 보수 지원을 넘어, 교통안전 문화 확립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포함시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이고 광범위한 접근과 장기적으로 사고 발생률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, 사고 예방에 그치지 않고, 교통안전 의식 함양과 문화 개선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- 따라서,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 및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6. 토론요지 : 생략
7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8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
10. 주문사항 : 없음
11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: 수정안 1부

김포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제3573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2025. 2. 11.
제출자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본 조례안은 일부 개정 발의 시 조례 시행일자를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는 사항임.

2. 주요내용

- 부칙 추가

김포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김포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수 정 안
부 칙	부 칙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	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